

大田廣域市農水產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

議案 番號	78
----------	----

提出年月日：1995. . .

提出者：大田廣域市長

1. 提案理由

- 農水產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關한 法律과 同法施行令 및 施行規則이 改正됨에 따라 名稱이 變更되어 이에 부합되게 동 條例를 改正하려는 것임.

2. 主要骨子

- “指定都賣人”을 “都賣市場法人”으로, “仲賣業者”를 “仲都賣人”으로 名稱變更 運用(案 第3條 第1號)
- 農水產物都賣市場設置條例 第3條를 附則規定에 의하여 改正함(案 附則第2項)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중 “지정도매인”을 “도매시장법인”으로 하고, “중매업자”를 “중도매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조례의 개정)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제3조중 “지정도매인(법인단체)”을 “도매시장법인”으로 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-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-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 (업무) 사무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지정도매인 및 중매업자의 지도 감독</u> 2. 재산유지관리 	<p>제3조 (업무) 사무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</u>----- 2. -----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-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-

현 행	개 정 안
제3조 (도매시장운영)도매시장은 <u>지정도매인(법인단체)</u> 을 두어 이를 운영관리하게 한다	제3조 (도매시장운영)도매시장은 <u>도매시장법인</u> 을 ----- -----

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5. 12.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995. 12. .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5. 12. 15. 대전광역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4. 12. 16.

다. 상 정 일 자 : 제48회 대전광역시 의회 정기회

제6차 산업건설위원회(1995. 12. 18) 상정,
질의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국장 박 성 호)

가. 제안이유

-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부합되게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“지정도매인”을 “도매시장법인”으로, “중매업자”를 “중도매인”으로 명칭 변경 운용 (안 제3조 제1호)
-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조례 제3조를 부칙 규정에 의하여 개정함. (안 부칙 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장 홍 진)

가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: 앞의 내용과 같음.

나. 검토의견

-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

한 법률('94. 11. 1 개정)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등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

례의 내용중 “지정도매인”을 “도매시장법인”으로 “중매업자”를 “중도매인”으로 용어가 변경되며, 아울러 대전광역시 농수산물

도매시장 설치조례 내용중의 관련용어도 변경코자 부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음.

-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,

상위의 관련법이 개정되어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없 음

5. 검 토 요 지

없 음

6. 소위원회 심사내용

없 음

7. 소수의견의 요지

없 음

8. 심 사 결 과

원 안 가 결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 음